

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제85조의2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해당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라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가. 법 제32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327조의3 제3항제1호	지정 취소	-	-	-

우로서 법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					
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327조의3 제3항제2호	지정 취소	-	-	-
다.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327조의3 제3항제3호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	업무 정지 1년	지정 취소
라. 법 제327조의3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·감독을 위반한 경우	법 제327조의3 제3항제4호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	업무 정지 1년	지정 취소
마. 법 제327조의3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7조의3 제3항제5호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	업무 정지 1년	지정 취소
바. 법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	법 제327조의3 제3항제6호	업무 정지 1년	지정 취소	-	-